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85~85p II. 요건 3.	개념, 공식-설명	3. 임차인이/ 경락기일까지 /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주택임대차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/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(대판 1998.10.13. 98다12379).	3. 임차인이/ 배당요구 종기(=첫 매각기일 이전)까지 /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주택임대차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/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(대판 1998.10.13. 98다12379). *주택임대차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인 대항요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해야 하는데, 배당요구의 종기와 관련하여 2002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락기일이었으나, 현재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첫 매각기일 이전을 의미 하므로, 경락기일을 배당요구의 종기(=첫 매각기일 이전)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. 98다12379 판결을 인용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.
97~97p I. 의 의	개념, 공식-설명	I. 의 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/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/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여/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/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.	I. 의 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/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/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.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